

의안번호	2111593
의 퇴 인	변재일의원
회 답 일	2021. 08. 21.

방사광가속기 구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I. 재정수반요인

□ 출연(안 제5조)

-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원활한 방사광가속기 구축 및 지원사업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방사광가속기 운영기관, 연구기관 및 그 밖의 법인(이하 “방사광가속기 운영기관등”이라 한다)에게 출연할 수 있음

□ 전문인력의 양성 등(안 제6조)

-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방사광가속기와 관련한 전문적인 기술과 지식 등을 가진 인력(이하 “전문인력”이라 한다)의 양성에 필요한 사항을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함

□ 기반시설에 대한 지원(안 제7조)

-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원활한 방사광가속기 구축 및 지원사업을 위하여 도로, 용수, 전력 등 기반시설의 설치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음

□ 임대료 등 지원(안 제8조)

-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방사광가속기 운영기관등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나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그 임대료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음

□ 부대시설 설치 등 지원(안 제9조)

-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방사광가속기 구축 및 지원사업 관련 시설 및 부지에 숙소, 편의시설, 보육시설, 복지시설 등 각종 부대시설의 설치 및 운영, 시설 이용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음

□ 세제지원(안 제10조)

-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방사광가속기 운영기관등에 대하여 세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 및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음

□ 국제교류 등의 사업과 지원(안 제11조)

-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방사광가속기 구축 및 지원사업과 관련한 국제적인 동향을 파악하고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전문인력 및 관련 연구기관의 국제교류와 산학연 국제 공동연구 수행 등의 사업을 시행하거나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음

Ⅱ. 미첨부 근거규정

□ 「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」 제3조제1항제3호

-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

Ⅲ. 미첨부 사유

- 제정안은 방사광가속기 구축 및 지원사업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, 토지·시설 임대료 및 국세·지방세의 감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

[표 1] 재정수반요인별 주요 내용

	조 항	주요 내용
방사광가속기 구축·지원	안 제5조	방사광가속기 운영기관, 연구기관 및 법인에 대한 출연
	안 제7조	도로, 용수, 전력 등 기반시설의 설치 지원
	안 제9조	각종 부대시설의 설치, 운영 및 시설 이용 등 지원
방사광가속기 관련 기반조성	안 제6조	방사광가속기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
	안 제11조	방사광가속기 관련 전문인력 및 연구기관의 국제교류 등 지원
임대료·세금 등 감면	안 제8조	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·시설 임대료 감면
	안 제10조	세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 및 지방세 감면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□ (안 제5조·제7조·제9조) 방사광가속기 관련 현행 사업이 확대될 수 있으나, 관련 재정수반요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사유로 추가재정소요의 추계가 불가능

-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충청북도는 이미 충청북도 청주시에 다목적 방사광가속기를 구축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
 - “다목적 방사광가속기 구축사업”은 2021년 4월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였으며, 총사업비 1조 454억원이 투입되어 2021년 7월부터 2027년 6월까지 6년간 추진될 예정

[표 2]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구축사업 개요 및 일정

	내 용
사업기간	2021. 7. ~ 2027. 6.(상세설계 2년, 가속장치 및 빔라인 구축 4년 등 총 6년 소요)
총사업비	1조 454억원(국비 8,454억원, 지방비 2,000억원)
부지/시설 규모	부지 540,000㎡(기본부지 260,000㎡ 포함) / 시설 69,400㎡

자료: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도자료, 2021. 7. 19.

- 방사광가속기 구축 및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가 보다 명확해짐에 따라 현행 사업이 확대될 수 있으나, 현 시점에서는 사업의 확대 규모 등을 추정하는데 한계가 있음
 - 정부는 방사광가속기의 가속장치, 빔라인 및 기반시설의 구축을 위하여 “다목적 방사광가속기 구축사업”의 2021년도 예산으로 115억원을 편성하였음

[표 3]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구축사업 내역: 2021년도 예산 기준

(단위: 백만원)

	내 용	2021년도 예산
가속장치 구축	· 가속장치 상세설계 및 장기제작품 초기 발주	9,100
빔라인 구축	· 빔라인 장치 상세설계 및 장기제작품 발주	1,200
기반시설 구축	·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건물공사에 필요한 설계비 등	1,200
합 계		11,500

자료: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

- 현행 “다목적 방사광가속기 구축사업”은 「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6조¹⁾ 등을 법적 근거로 하여 실시되고 있음

1) 「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6조(기초연구사업의 추진)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종합계획과 시행계획에 따른 기초연구사업을 추진하여야 하며, 기초연구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해당 기초연구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위탁

- 제정안이 방사광가속기 구축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현행 사업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음

□ (안 제6조·제11조)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방사광가속기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및 국제교류 등을 지원할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나, 지원 대상 및 범위 등을 추정하기 곤란하여 추가재정소요의 추계가 불가능

-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정안에 따라 방사광가속기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(안 제6조) 및 국제교류 등(안 제11조)을 지원할 경우,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
- 안 제6조 및 제11조의 재정수반요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사유로 추가재정소요의 추계가 불가능
 - (안 제6조) 방사광가속기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하여 “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...에 필요한 사항을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”고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하고 있음
 - (안 제11조)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전문인력 및 관련 연구기관의 국제교류 등을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, 현재는 다목적 방사광가속기의 구축 초기 단계로, 방사광가속기 관련 국제교류 등이 추진되고 있지 않고 이에 관한 계획도 마련되어 있지 않음

□ (안 제8조·제10조)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방사광가속기 운영기관등에 대하여 토지·시설 임대료, 국세·지방세 등을 감면할 경우 재정수입의 감소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나, 현 시점에서는 합리적으로 추계가 불가능

-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방사광가속기 운영기관등에 대하여 토지·시설 임대료(안 제8조), 국세·지방세(안 제10조) 등을 감면할 경우 감면액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재정수입의 감소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
- 안 제8조 및 제10조의 재정수반요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사유로 재정수입감소의 추계가 불가능

할 수 있다.

1.~5. (생략)

②~④ (생략)

- (안 제8조) 임대료 등의 감면은 방사광가속기 운영기관등이 사용하는 토지·시설의 임대료 등에 대한 전부 또는 일부 감면으로, 해당 운영기관등이 정해지지 않은 현 시점에서는 토지·시설의 사용 규모 등을 알 수 없으므로 토지·시설 임대료 등의 감면액을 추계하기 곤란
- (안 제10조) 세제 지원은 「조세특례제한법」, 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 및 그 밖의 관련 세법에서 감면대상, 감면요건, 감면을 등을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할 수 있으나, 현행 세법은 방사광가속기의 세액 감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, 현 시점에서는 감면 세액의 규모를 추계하기 곤란

□ 이상의 논의를 통해 살펴본 바와 같이, 현 시점에서 제정안에 따른 재정 수입감소 및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, 제정안은 「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」 제3조제1항제3호의 비용 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

국회예산정책처	사회비용추계과
과장	이진우
추계세제분석관	유희수
연락처	02-6788-4740
	hsyoo@nabo.go.kr
